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82

발의연월일: 2023. 8. 11.

발 의 자 : 홍익표 · 전재수 · 이장섭

신동근 · 신정훈 · 박홍근

홍성국 • 이상헌 • 조오섭

이병훈 • 이원욱 • 김영배

임종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, 국민의 알권리 보장,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사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

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 자의 정면·좌측·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,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(안 제8조의2).

법률 제 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개할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·좌측·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	①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	
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	
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	
한 정보를 <u>공개할</u> 수 있다.	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기간 동안 공개할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
	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
	<u>영한 피의자의 정면·좌측·우</u>
	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
	<u>공개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